

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옥규 의원 등 8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0년 5월 29일

○ 회부일자 : 2020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○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사용 용어의 정의-관광약자, 대상시설(안 제2조)

○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(안 제3조)

○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 (안 제4조)

○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(안 제5조)
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관광사업
- 그 밖에 도지사가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설비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에서는 관광약자, 대상시설에 대한 정의를,
 -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,
 - 안 제4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 사항을,
 - 안 제5조는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,
 - 안 제6조에서는 관광환경 조성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이 조례안은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관광약자가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관광 향유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. 끝.